

「2023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등의
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」 고시

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「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」 제2호 가목에 따른 「2023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」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3월 2일

국토교통부장관

2023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

(단위 : 원/m², 주거전용면적 기준)

구 분	급지기준	표준임대보증금	표준임대료
1급지	서울특별시	108,072	2,153
2급지	광역시 및 수도권	102,489	2,041
3급지	인구 30만 이상 도시, 도청소재지	97,134	1,933
4급지	그 밖의 지역	92,199	1,833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